기세세무회계
TAX & ACCOUNTING
주소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0 302호 · T: 02-6954-0169 · F: 02-6954-0178

증여세 신고 준비 서류

가족 등에게 현금·부동산·주식을 받았을 때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.

필수 꼭 준비해 주세요

- [ ] **증여자·수증자 신분증 사본**
  본인 보관
- [ ] **가족관계증명서 (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)**
  정부24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- [ ] **증여재산 확인 서류**
  아래 재산별 서류 참고
 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현금은 이체 내역, 주식은 잔고증명서
- [ ] **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내역**
  본인 보관 · 홈택스
  부모님께 받은 경우 아버지·어머니 증여분을 합칩니다.

추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해 주세요

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

- [ ] **증여계약서**
  법무사 · 본인 작성
- [ ] **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**
  인터넷등기소 · 정부24
- [ ] **공시가격 확인 자료**
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- [ ] **감정평가서 (평가를 받은 경우)**
  감정평가법인

▸ 대출·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(부담부증여)

- [ ] **대출 잔액증명서**
  대출 은행
- [ ] **임대차계약서 (전세·월세 보증금 확인)**
  본인 보관

▸ 현금·예금을 증여받은 경우

- [ ] **입금 통장 사본, 이체 확인증**
  은행

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

- [ ] **상장주식: 증권 계좌 잔고증명서**
  증권사
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합니다.
- [ ] **비상장주식: 최근 3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**
  해당 회사

▸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는 경우

- [ ] **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신고일 확인)**
  정부24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- [ ] **자녀의 출생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**
  정부24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▸ 창업자금·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

- [ ] **사업계획서, 법인 재무제표·주주명부 등**
  상담 후 개별 안내

안내 이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상담 후 꼭 필요한 서류만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.

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상담 후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.